

의안번호	2201606
의 퇴 인	임오경 의원
회 답 일	2024. 8. 19.
추계번호	24B13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칸막이벽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64억 8,700만원(연평균 172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대, 천원, 백만원)

안 제50조(재정지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택시 지원 대수(A)	47,591	47,591	47,591	47,590	47,590	237,953	—
택시 지원 단가(a) (설치단가의 50%)	200	204	209	213	218	—	—
택시외 지원 대수(B)	11,758	11,758	11,758	11,758	11,758	58,790	—
택시외 지원 단가(b) (설치단가의 50%)	600	613	626	639	653	—	—
추가재정소요 (a×A + b×B)	16,573	16,938	17,293	17,656	18,027	86,487	17,297

주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의 칸막이벽 설치 현황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택시 칸막이벽 설치 지원 지자체 사업 대상 외의 택시는 모두 칸막이벽이 미설치되었다고 가정하고,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자동차 중 칸막이벽 미설치 차량에 대하여 칸막이벽 설치 단가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택시의 실제 칸막이벽 설치 현황 및 칸막이벽 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0조(재정지원) 제2항제9호 신설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9. 제52조의2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량규정
	안 제50조(재정지원) 제4항제3호 신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제50조제2항제9호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량규정
	제52조의2(안전시설의 설치 권장) 신설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와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50조(재정지원) 제2항제9호 신설	○	국토교통부 및 시·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안 제50조(재정지원) 제4항제3호 신설		
	제52조의2(안전시설의 설치 권장) 신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칸막이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게 하고, 해당 시설 설치를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시·도별 지원 기준을 알 수 없으나, 시·도별 과거 택시 칸막이벽 설치 지원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
- 칸막이벽시설 단가는 국토교통부 제출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¹⁾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²⁾ 면허·등록 자동차 수 및 칸막이벽 설치 현황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수는 342,325대이고, 그중 현황 파악이 가능한 칸막이벽 설치 자동차는 32,108대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5	2026	2027	2028	2029
2.2	2.2	2.1	2.1	2.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자동차 수 및 칸막이벽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면허·등록 자동차 수	칸막이벽 설치 자동차 수
시내버스운송사업	35,572	30,346
농어촌버스운송사업	2,082	0
마을버스운송사업	5,506	1,665
시외버스운송사업	6,592	0
전세버스운송사업	40,923	0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3,490	0
일반택시운송사업	83,355	파악 불가
개인택시운송사업	164,582	파악 불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23	97
합계	342,325	32,108

자료: 국토교통부

□ 시·도별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지원 사업 현황

- 시·도별 택시운수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2014년 및 2019년 안전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0%를 지원하는 등 다수 시·도에서 택시운수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한 바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단가는 9만 9,000원에서 27만 5,000원 사이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비의 50%~100%를 지원하였음
 -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방역을 위한 비말차단막(단가 11만원 가량)을 지원하였음

[표 3] 시·도별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지원대수	단가	사업내용
서울	2014	30	—	설치비 50% 지원
	2019	236	—	
	2021	493	176	최대 10만원 내 지원
부산	2018	54	250	설치비 50% 지원
인천	2022	768	99	설치비 50% 지원
광주	2021	223	220	설치비 80% 지원
	2022	113		
	2023	170		
대전	2019	27	275	여성운전자에게 설치비 50% 지원
	2021	790	110	코로나19 비말차단막 설치비의 70% 지원
울산	2023	243	250	설치비의 100% 지원
경기	2015	533	250	설치비의 80% 지원
	2016	1,048		
	2017	1,995		
	2021	25,002	109	코로나19 비말차단막 설치비의 100% 지원
충북	2021	811	110	코로나19 비말차단막 설치비의 100% 지원
충남	2021	256	110	코로나19 비말차단막 설치비의 100% 지원
경남	2022.4.~ 2023.5.	4,427	250	설치비의 90% 지원
제주	2022	93	110~250	설치비 50% 지원

주: 경기도 2017년 사업 물량 중 500대는 시흥시에서 2017년도 명시이월 후 2018년에 실시했는데 2017년 통계로 포함

자료: 각 시·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9월 기준)

□ 시·도별 택시운수종사자 칸막이벽 설치 현황

- 위의 시·도별 택시운수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 비말 차단막 지원 사업 물량을 제외하고,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벽을 설치한 물량은 9,984대로 파악되나, 시·도별 전체 택시 중 칸막이벽이 설치된 택시의 현황은 파악이 어려움

[표 4] 시·도별 택시 중 칸막이벽 설치 현황

(단위: 대)

구 분	택시 칸막이벽 설치 대수	
	전체 현황	최근 칸막이벽 지원 사업 대수
계	—	9,984
서울	자료 없음	759
부산	자료 없음	85
인천	자료 없음	768
광주	자료 없음	506
대전	자료 없음	27
울산	자료 없음	243
세종	자료 없음	0
경기	24,058	3,076
충북	자료 없음	0
충남	자료 없음	0
전북	자료 없음	0
전남	자료 없음	0
경남	자료 없음	4,427
제주	자료 없음	93

주: 최근 칸막이벽 지원 사업 대수는 칸막이벽 설치 기준임(코로나 비말 차단막 설치 사업 제외)
 자료: 각 시·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9월 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칸막이벽 설치 지원 추가재정소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체 자동차 중 칸막이벽 미설치 자동차에 대해 칸막이벽 설치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추계기간 동안 균등 배분하여 칸막이벽 설치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64억 8,700만원(연평균 172억 9,700만원)으로 추계
 - － 택시의 경우, 최근 시·도사업을 통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택시를 제외한 택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 칸막이벽 단가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택시 40만원, 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12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가정

[표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수 및 칸막이벽 설치 필요 물량 현황

(단위: 대)

구분	면허 또는 등록 자동차 수(A)	칸막이벽 설치 자동차 수(B)	칸막이벽 설치 필요 자동차 수(A-B)
시내버스운송사업	35,572	30,346	5,226
농어촌버스운송사업	2,082	0	2,082
마을버스운송사업	5,506	1,665	3,841
시외버스운송사업	6,592	0	6,592
전세버스운송사업	40,923	0	40,923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3,490	0	0 ¹⁾
택시운송사업	247,937	9,984	237,953 ²⁾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23	97	126
합계	342,325	42,092	296,743

주 1) 특수여객자동차는 장의 차량으로 칸막이벽 설치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2) 택시의 경우 칸막이벽 설치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 최근 지자체 사업을 통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택시 외의 물량 전체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칸막이벽 설치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대, 천원, 백만원)

안 제50조(재정지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택시 지원 대수(A)	47,591	47,591	47,591	47,590	47,590	237,953	—
택시 지원 단가(a) (설치단가의 50%)	200	204	209	213	218	—	—
택시외 지원 대수(B)	11,758	11,758	11,758	11,758	11,758	58,790	—
택시외 지원 단가(b) (설치단가의 50%)	600	613	626	639	653	—	—
추가재정소요 (a×A + b×B)	16,573	16,938	17,293	17,656	18,027	86,487	17,297

주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의 칸막이벽 설치 현황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택시 칸막이벽 설치 지원 지자체 사업 대상 외의 택시는 모두 칸막이벽이 미설치되었다고 가정하고,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자동차 중 칸막이벽 미설치 차량에 대하여 칸막이벽 설치 단가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택시의 실제 칸막이벽 설치 현황 및 칸막이벽 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의 칸막이벽 설치 현황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택시 칸막이벽 설치 지원 지자체 사업 대상 외의 택시는 모두 칸막이벽이 미설치되었다고 가정하고,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자동차 중 칸막이벽 미설치 차량에 대하여 칸막이벽 설치 단가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택시의 실제 칸막이벽 설치 현황 및 칸막이벽 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